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없애고 복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 및 해지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적합하도록 정비(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11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사유 신설(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4조제3항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5년 이내” 를 “5년” 으로 정비하였으며,
 -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단서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일치하도록 삭제하였으며,
 - 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서 신설 조항에 대한시행 시기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으며,
 - 안 제11조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의 해지 사유는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위배 소지를 없애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00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우리 구 조례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기간 및 해지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적합하도록 정비(안 제 4조, 안 제11조)
-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사유 신설 (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개선의견 통보 및 반영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항과 해임·해촉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조문 신설

3) 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9.14. ~ 10.10.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 중 “**규칙**”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5년 이내**”를 “**5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칙**”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9명**”을 “**7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단, 위탁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으며,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한다**”를 “**없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전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제1항 중 “**규칙**”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필요를 하는 <u>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시설의 위탁) ① (생략)</p> <p>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u>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u>」(이하 “<u>규칙</u>”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 심의 기준 및 배점은 별표와 같다.</p> <p>③ 위탁계약기간은 <u>규칙</u>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u>5년 이내</u>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위탁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p>	<p>제1조(목적) ----- -----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u> ----- ----- .</p> <p>제4조(시설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u>」 ----- ----- ----- ----- .</p> <p>③ --- 「<u>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u>」 ----- <u>5년</u> ----- . -- ----- ----- ----- ----- -----</p>

한다.

④ (생략)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위탁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 수는 위촉된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민간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

② -----
----- 7명 이상 9명 이내

1. ~ 3. (현행과 같음)

4. -----

--. <단서 삭제>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 수는 위촉된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

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

〈신 설〉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성범죄, 부당노동행위 등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 ④ (생략)

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